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9일, 인요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8.)

상정·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1. 19.)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1. 24.)

상정·대체토론·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인요한의원)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신고·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모든 침해사고에 적용하기보다는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침해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은 삭제하지 않아 중복 부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_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